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(4차 산업혁명 대응)혁신형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협력·협업 대응책 마련 필요

나. (중기전용R&D 협업환경 조성)중소기업 R&D 역량강화를 위해 구미지역 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형 R&D 추진
다. 이에따라, 관내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업종 다각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추진하여 수직적 산업구조 탈피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 예정액 : 금200,000천원(시비)

(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3) 사업연도 : 2018년

(4) 사업대상 :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

나. 주요 사업

(1)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R&D기획 강화

- (신규 사업아이템 발굴)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사업
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매칭데이 개최
- (융합형 R&D과제기획 지원)국가 R&D 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
- (우수연구소 발굴·육성)지역기업이 중앙부처의 우수 기업연구소,
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을 받기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선점

1)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▶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지정, 확정일로부터 만 3년 이후 효력상실)
- ▶ 정부포상, 인증서 및 현판 수여, 각종 홍보 등 지원, 국가 R&D 사업 가점
부여 등

2) ATC(Advanced Technology Center) 지정 - 산업통상자원부

- ▶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, 기술개발자금 지원
 - ▶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별도지급(연간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10%이내)
- * 2017년 부처예산 : 287억원 **기업당 최대 5억원/년, 3년까지 가능

(2) 기술교류 협력 활성화

- (기술교류 활성화)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
- (수요자 맞춤형 신기술·신시장 창출 지원)해외 선진기술
동향·시장조사
- (R&D 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)R&D 라이프사이클
전 단계에 대한 기획역량 강화 교육 실시

(3) R&D-사업화 선순환 구조 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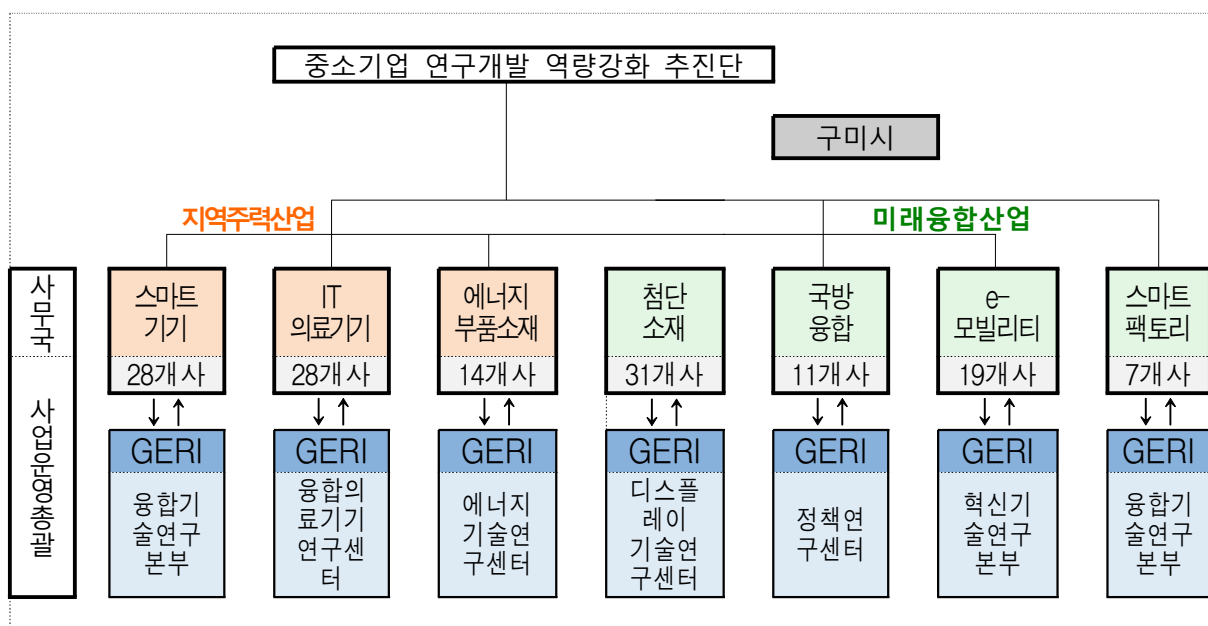
- (투자연계형 R&BD 지원) 민간투자기관과 연계하여 R&D 기획과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지원
- (협업전문회사 설립 지원) 공동연구개발,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공동출자 형식의 협업전문회사 설립 지원

(4) 협력형 혁신플랫폼 구축

- (오픈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) 온라인 공유 플랫폼 설계·구현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
- (협업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) 출연연, 원천기술 보유기관, 대학 등 수평적 협업 파트너 매칭

다. 운영체제

- (1) (구미시)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결정 및 사업총괄
- (2) (사무국) 운영 총괄 실무 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정책연구센터
- (3) (분과위원회) 연구개발, 신규사업 발굴 및 기술교류 등

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(1) 국내 ICT의 생산거점이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로 지역 경제의 위기감 고조
- (2) 대기업 중심의 직렬적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노력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급증
※ 기업연구소 ('08)179개 → ('16)408개, 전담부서 ('08)47개 → ('16)200개
- (3)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중심으로, 중소기업의 수직적·수평적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괄지원체계 구축과 사전 R&D 과제기획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
- (4) 지역의 산학관연 주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'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회'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,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제1항, 제4조 제1항
- (2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(책무) 제1항, 제3항 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제1항

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제1항, 제2항, 제4조 (사업)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※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
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
인정되는 사업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제4조(책무)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그 인력·인재 육성, 정보네트워크 구축,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, 신기술의 보급·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 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
2. 문화 확산사업 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소관 실 · 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이 창 형
	담 당	조 영 열
	담 당 자	강 욱 현 (480-6103)